

「고흥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안 제18조의2제4항)
 - 염해농지를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추진 시 이격거리 제한 완화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 2023. 11. 3. ~ 2023. 11. 9.(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 061-830-5032,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조례 제 호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나. 사업장 소재지의 마을(사업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실거주 주거 시설이 있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5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일 것

다.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2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주거밀집지역(10호이상)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③ (생략)</p> <p>④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중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2.06.)</u></p>	<p>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u> 2.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u> 3. <u>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나. <u>사업장 소재지의 마을(사업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실거주 주거시설이 있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5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일 것</u>

⑤ ~ ⑦ (생략)

다.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
거리로 2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주거밀집지역(10호이상)으로
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⑤ ~ ⑦ (현행과 같음)

[붙임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